

『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상조 의원 외 8인

2. 제안이유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일부 조례로 위임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, 교육연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육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교육연구시설의 범위 확대 (안 제33조관련 별표 22 제2호라목)
‘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’를 ‘교육연구시설’로 개정.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건축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□ 본 ‘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 은,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,

- 교육연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육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,

“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”를,

⇒ “교육연구시설”로 개정하는 것임.

□ 검토결과

○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,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